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

도시건설위원회(건설관리과)

의안번호	제 363 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 (2024. 11. 7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 진 만

1. 제안이유

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하여 「성북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‘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’에서 ‘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’으로 제목을 변경하여, 전자게시대 등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 게시 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3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4. 9. 19. ~ 2024. 10. 10. (21일간), 의견없음

4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주요내용으로 안 제21조에서

- 제목: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→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의 위탁 등
- 제1항 추가: 시 조례 → 제9조제3항¹⁾ 추가
- 제1항: 따른 → 따른 전자게시대
- 제1항: 지정벽보판 → 지정벽보판 등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
- 제3항: 현수막 → 전자게시대, 현수막
- 제3항: 지정벽보판 → 지정벽보판 등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로 변경

1)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

제9조(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)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7.13., 2019. 7. 18., 2023.5.22.>

1.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철도역·지하철역·공항·항만·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
 - 나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
 - 다.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
2.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2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3.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,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4.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구 조례로 정한다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‘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’에서 ‘옥외광고물 게시 시설의 위탁 등’으로 변경하여, 전자게시대 등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 게시 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